



수원당수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 28,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 **공급대상** : A-3블록 400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세대 304동 1202호 (전용면적 55㎡)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해약세대가 입주 후 퇴거하여 거주에 따른 사용감이 있습니다. 또한, 해약세대가 추가선택품목 선택 및 개별 시공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수원당수 A-3블록 최초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2.01.21., 2023.04.11., 2026.07.27.)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당수 A-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린 다

- 수원당수 A-3블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가 개시(최초 입주지정기간 : '23.05.31~'23.07.29.)되었으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집대금 알선은 불가하여 수분양자 자격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당수 A-3블록의 건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팜플렛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26.11.02.(월) 10:00~16:00(예정) (점심시간 12:00~13:00제외, 당첨자 사전예약제 운영)] **당첨된 주택을 오픈할 예정**이오니, 세대 방문 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팜플렛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은 '서수원 한라비발디 3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당수 A-3블록은 400세대 중 266세대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3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2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당첨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수원당수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구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266세대) 및 행복주택(134세대)이 혼합되어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 및 당첨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모 두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청약 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계약체결(현장계약)
'26.09.29.(화)	'26.10.12.(월) (10:00~17:00)	'26.10.15.(목) 추첨 14:00, 발표 18:00	'26.10.19.(월) (10:00 ~ 17:00)	'26.11.06.(금) (10:00 ~ 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현장접수 불가		추첨 : LH 수원주택전시관 2관 (전산추첨) 발표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 서류접수 및 현장 계약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부적격 소명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 네이버, 토스, KB, 신한, 카카오뱅크, 삼성패스, NH, 하나, 우리,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IBK, 카카오뱅크 총 13종, 이하 '간편인증 13종')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
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속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연속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
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
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말함이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납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와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
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에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를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
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
을 통해 단정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개요 : 연 1.3% 고정금리(최초 모집공고(2020.12.31.)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본 상품은 「주택도시보증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3년간 조기상환 원칙적 불허)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보증(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대출 70% 실행시			대출 60% 실행시			대출 50% 실행시			대출 40% 실행시			대출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합니다.
-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수원당수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답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수원당수지구 A-3블록(총 40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면적 (계)	공유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예정 시기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예비자	
A-3	055.0000B	55BL	확장	55.79	22.4856	9.3248	43.8743	131.4747	46.1692	6	1	5	15

- * 금회공급되는 세대(1호)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시공 되었으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펌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세대로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읍내내역으로 시공하였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당수 A-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잔금납부 및 키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동	호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055.0000B	304	1202	418,800		41,880	321,920
						입주시(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5,000

- * 공급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중요] 청약 전 펌플릿 등으로 동·호 배치도, 주택형별(세부평형이 있을 경우 세부평형 포함)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답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 60일 이내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4.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공급가격 안내(선택벽가, 발코니 확장 금액 포함)

■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설치 안내(발코니 확장 금액 포함)

- * 공급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해당 주택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 동·호는 당첨자신청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주택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으로 시공되며 아래의 추가선택품목만 설치되어 있으며(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었으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펌플릿 등을 통해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형	동-호	선택품목 (아래 항목 이외의 선택품목은 기본형으로 설치)	납부조건(단위: 천원)			비고 (추가설치 및 변경 불가)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0000B	304-1202	[공간선택]기분형(침실2/알파룸 분리)	-	-	-	
		발코니 확장	5,700	570	5,130	
		1.[바닥재]■기능성 틸카펫(6mm)	-	-	-	무상
		2.[가구]■팬트리 시스템 선반	-	-	-	무상
		합 계	5,700	570	5,130	

■ 시스템에어컨 개별설치 세대 유의사항

※ 아래 세대에는 추가선택품목과 무관하게 이전 계약자가 개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이 있으며, 해당 설비는 현 상태 그대로 인계됩니다. 해당 설비와 관련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 일체의 책임은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호	설치 위치	설치유형	인계조건
304-1202	거실, 침실1, 침실2	입주자 별도 설치(선택옵션 미선택)	현 상태 그대로 인계 (하자보수 책임 LH 청구 불가)

5.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 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는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세대로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자정기간이 부여됩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 연체대금 납부시점의 연체이율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자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수원당수 A-3블록은 기입주단지로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3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0.15.)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제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 만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 시 확인사항(전매제한 등)

1. 전매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처리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기재하신 분은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V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불가]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6.10.12.(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거나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총 13종) 로그인 방식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or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삼성페스 등)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타입)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6.10.12.(월) 10:00 ~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렛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 청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 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한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6.10.12.(월)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등)

■ 동호추첨

• 추첨 일시 : **2026년 10월 15일 (목) 14:00**

• 추첨 내용 : 수원당수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10.14(수) 17시까지 신청(연락처 031-297-522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2명)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하신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세대 구분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순번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함께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및 당첨자 세대개방 안내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계약체결(현장계약)
'26.10.15.(목) 추첨 14:00, 발표 18:00	'26.10.19.(월) (10:00 ~ 17:00)	'26.11.06.(금) (10:00 ~ 17:00)
추첨 :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전산추첨) 발표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급곡동 1149)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급곡동 1149)

※ **부적격 소명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통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하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확인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세대 개방 안내

• 세대개방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아래 예정 일정에 따라 실제 주택을 개방합니다.

• **개방일시: 2026.11.02.(월) 10:00 ~ 16:00(예정)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방법: 당첨자 사전예약제 운영**

※ 상기 개방 일정은 예정 사항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안내됩니다.

※ 유의사항: 당첨자는 세대 방문 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착오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10.19. 10:00~17:00)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후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해당자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세대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세대원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발급
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계약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당첨자의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 시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마감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퍼센트]**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 발제)

- **지구 여건**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99호, 2018.01.04.)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6호, 2019.12.10.)로 승인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동될 소지가 있음
 - 지구 서측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며, 지구 남측에는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함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지구 서측의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시 본 지구와 연계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에 따라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계획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일부가 군항공기의 운항경로에 포함되어 **항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공공처리시설(변전소)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설 위치는 지자체, 한전 등 관련기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예정임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설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서측으로는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와 연계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에 따라 공원, 학교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동될 소지가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수원당수지구 내외 유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해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연결한 호매실지구내 전기 및 열 공급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구 동남측 반경 3km내 수원시 황구지천하수처리장이 준공예정임('22년말)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전력기기, 가로등, 통신호등 등 노상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공통)

- 본 단지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옹벽 등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상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승강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되며, 일부 인접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인접한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1층에 설치된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통신인입 관련하여 통신맨홀이 단지출입구 부근에 설치될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지하주차장에는 안전운행과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이 설치되며, 주차공간 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음
- 무인택배시스템과 스마트우편함을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쓰레기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도난이나 기밀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에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481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2대이며, 총 483대 중 15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은 동별로 상이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키즈(작은)도서관,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G.X룸), 관리사무소, 계절창고, 경비실, 택배보관소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어린이집에는 주방기구와 신발장이, 피트니스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제공(의자, 소파 등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인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계절창고는 각동 지하에 설치되며, 각 운영방법은 입주 후 결정·안내될 예정임(계절창고 설치 수량은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 가능할 수 있음)
- 303동 3,4호 라인 전면 및 304동 1호 라인 측면 인근 지상 1층에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열기·먼지 등 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량의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임
- 태양광설비는 301동, 302동, 303동 지붕층에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공청 및 위성 안테나는 301동 옥탑층에 설치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 : 304동 남서방향 지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1대 및 이동식충전기용 콘센트를 지하주차장에 설치 예정임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 : 305,306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304동 인근]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아파트 각 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승강기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승강기홀과 현관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모양·BI 로고·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철로 시공되며, 팬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뿔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모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보주택,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보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건보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요망함(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 설치 시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주방가구 상부장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상부장 부착 시 설치 요청을 받아 시공사가 설치하며 렌지후드는 공용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입주자가 설치해야 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 및 PIT층 환기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1층을 제외한 전 세대는 아래층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 내 설치될 예정임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별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며,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도 마감자재(타일)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결레받이 미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미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월패드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되며,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욕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랜지후드는 덤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유닛 및 덕트, 선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해당 없음)
- 지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 설치 시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주방가구 상부장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상부장 부착 시 설치 요청을 받아 시공사가 설치하며 랜지후드는 공용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입주자가 설치해야 함
-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2층 이상 설치,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 직상층 등 일부 미설치) 및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랜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욕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랜지후드는 덤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에어컨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설치 됨)
- 1층, 2층 및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작감지기가 거실, 침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는 거실에 설치됨
- 주방 키르수납장을 추가품목으로 선택할 경우 김치냉장고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발코니에 냉장고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품목으로 선택할 경우 실외기용 전원을 공급하며, 에어컨용 콘센트는 미설치되고 박스 플레이트로 마감됨
- 통신 세대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분전반과 생활정보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형별에서는 현관 중문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부부욕실(또는 공용욕실)에 설치되는 무선형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보조등은 매입형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아일랜드식탁(추가품목)과 일반식탁 배치위치를 고려하여 설치됨
- 발코니와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및 환기유닛 설치에 따라 벽부형 또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소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무선랜(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변경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추가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설치위치는 효율적인 냉방을 위해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1 천장에 냉매배관이 일부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에는 IoT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설치를 원하실 경우 입주자께서 개별적으로 설치하셔야 함
- 55A형은 발코니2 PL창호의 열변형 방지를 위해 실제 시공 시 쿼트 위치가 창호 반대편으로 다소 이동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싱크대 상하부장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관할 교육청
초등학교	초1	미정	미정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중1	미정	미정	

- 수원당수지구 A-3블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단지 북측 **당수초등학교**이며,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통학구역인 당수초등학교는 북부중학교 2구역(대평중, 명인중, 송원중, 율전중, 이목중, 정전중, 천천중), 북부중학교 3구역(율전중, 구운중, 서호중), 호매실중학교(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능실중)이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A-3블록 남동측에 초등학교, 서측에 중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학교설립 시기는 미정임

- 수원시 지역은 **평준화 지역으로 수원학군 학생 배정방식에 의거 수원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함**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원당수지구 내 학교는 초·중학교 총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중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건물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결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중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건물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건물주택,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 발췌)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 발췌)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환경관련 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질성도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름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상기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예비인증 심의결과로 입주시점 본인증시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31.) 발제)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3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주)한라 (215-81-40656)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7. 분양문의

서류제출, 계약장소	분양문의
■ 위치안내 : LH 수원 주택전시관 2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오시는길 - 버 스 : 자목마을입구/ 호매실쌍용아파트 하차 · 일반버스 : 7,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 99 · 광역직행 : 7800, 8000 ■ 운영기간 : (서류접수) 2026. 10. 19.(월) 10:00~17:00 (계약체결) 2026. 11. 06.(금) 10:00~17:00	■ 수원당수 A-3블록 상담전용 : 031-297-5229 (평일 10:00~17:00)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2026. 09.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